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206514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20651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가합5043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환 담당변호사 이지훈

변론 종결 2019. 4. 11.

판결 선고 2019. 5.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가합50432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6,450,44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50,447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추가판단》

피고들은,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갚는 수단으로서 경매보다는 나은 처분방법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위 판결은 채무자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체적 사안에 관한 판시를 담고 있을 뿐,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담고 있지는 않다.

둘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갚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을다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해서 그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대금이 책정되었으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재판장판사김재호

판사이혁

판사조은래

별지